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31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시청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함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하는 내용		
1	노○연	1996.12.30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 등 의무 불이행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*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재참여 제한	수취인부재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거마평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6. 8. 31. ~ 2026. 9. 14. 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시청 전주고용센터 신학빈(063-270-916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